

2004년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2004. 10



국회의원 최규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33호 (Tel 784-6382)

[www.kangbukzzang.net](http://www.kangbukzzang.net)

제작 : 정치컨설팅그룹 MIN ■ 02)784-2610 ■ 02)784-545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최규식

## 발간사

공 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민 단체의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내부에서도 관련자가 아니면 존재조차도 몰랐던 조직이 점점 우리 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책과 그림들이 이적표현물로 감정되었고 지금도 다수의 표현물이 공안의 잣대로서 감정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내놓은 용공성과 좌익성에 대한 감정결과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근거로 활용되어 법원의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마다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사상검증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연구소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왜 시민사회는 연구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또한, 왜 하루 평균 40여편의 출판물이 국가기관의 연구소로부터 사상의 잣대로 검증 받아야만 하는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건국이래 최초의 개혁세력 과반수 의회권력 확보등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제도적 형태를 갖추어져가고 있음에도, 왜 연구소는 여전히 음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단 말인가?

이제는 밝혀야 한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강압적으로 좌익·용공이라는 특정방향으로 조작되어 고문받고 감옥으로 가야했던 역사, 심지어 죽음으로 이르렀던 역사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그 시발점이 공안문제연구소에 있다.

우리당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과거사 규명을 위한 역사적 대장정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장정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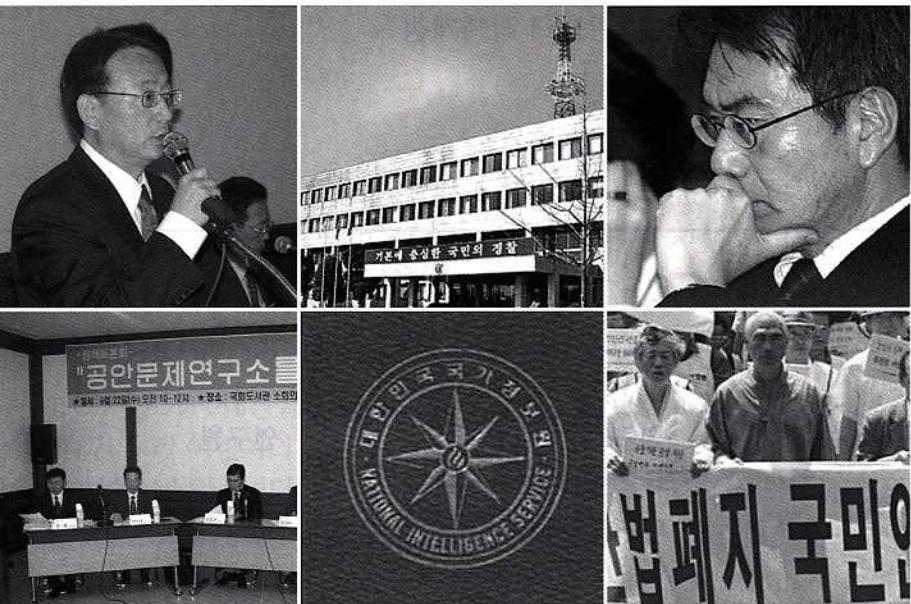
이번 발간되는 이 정책자료집이 우리 사회 발전에 조그마한 기여를 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004.10

국회의원 **최규식**  
(열린우리당, 강북을)

2004년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목차

발간사 / 02

목차 / 04

공안문제연구소란 / 06

피해사례(이장희 교수)/ 07

토론회 자료집 –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 11

토론회 개요 / 11

발제문 : 한상희 교수 (건국대) / 12

토론회 1 : 정진상 교수 (경상대) / 22

토론회 2 : 문성호 소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 27

토론회 주요발언록 : 박광작 교수 (성균관대), 윤 흥 연구관 (공안문제연구소) / 30

참고자료 1) / 35

참고자료 2) / 41

2004. 1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최규식

# 공안문제연구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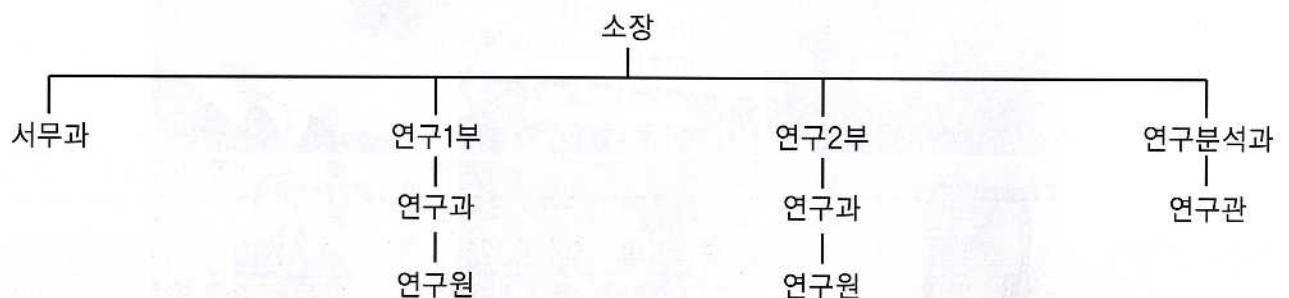
## ▶ 현황

### 연혁

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산하의 내외정책연구소

- 1988. 10. 20 공안문제연구소 설립(대통령령 제12539호)  
설립근거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 1989. 1. 13 공안문제연구소 개소
- 1989. 2. 10 공안문제연구소운영규칙 제정(경대훈령 제19호)
- 1995. 12. 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의 직제개정

### 직제



### 인원

계	별 정 직						경 찰 직				기능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경정	경위	경사	
21	14	1	2	6	3	2	3	1	1	1	4

## ▶ 주요사업내용

-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공안사건 관련 감정업무 처리
- 학술연구지 발간
  - 공안연구 : 년 5~6회 발간
  - 공안논총 : 년 1회 발간
- 학술세미나 개최 (년 1회)
- 안보 및 보안경찰 실무교육의 강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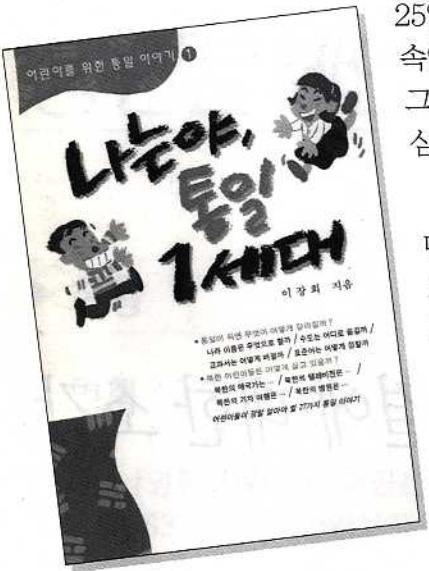
## “나는야 통일 1세대”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소감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

저는 9년전 지난 1995년 10월 (사)경실련 통일협회의 정책위원장으로서 바쁜 시간을 내어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의 통일완성세대인 우리 어린이의 균형된 북한관 정립을 위해 [나는야 통일 1세대](천재출판사/1995)라는 책 집필진의 한사람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출간 당시 이 책은 통일부와 관련 정부기관 및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간 2년후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가 1997년 월간조선 7월호에서 이 책을 [이상한 책]으로 매도 하더니, 저는 급기야 보수적 극우단체에 의해 대검찰청에 고발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가 책자의 내용중 “통일이후 어디가 수도인가, 무엇이 정통성인가” 등을 두고 통일부를 찾아 항의를 하고, 월간조선 97년 7월호에서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캠파인” 기사를 통해 이 책자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고 나오자, 극우 보수단체들이 1997년 7월에 대검찰청에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동욱 기자는 월간조선 9월호에서 “어? 왜 빠졌지요?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후속기사를 통해 본서 중에 어린이가 쓴 내용을 제가 왜곡, 변경시켰다고 오보함으로써 저를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사설(1997.8.29)을 통해 월간조선 9월호 이동욱기자의 “오보기사”를 옹호하고 저의 학자로서의 명예에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었습니다.

월간조선의 기사만 믿은 극우성향의 단체들(통일대비포럼/오제도; 민족안보구국통일연합회 외 50개단체, 대표, 오제도, 위원장 김정철)은 연일 조선일보와 각종 매체에 비방적인 광고를 내고, 파고다공원 등에서 저자인 이장희 구속과 통일부 권오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국회외통위에서는 보수성향의 국회의원(이건개, 조웅규)은 권오기 장관에게 이장희 교수의 통일부정책자문위원 해촉과 검찰고발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초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심문 후 50여일이 지나면서 대선(1997.12.18) 열풍이 가열되자 검찰은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저를 1997년 11월



25일 갑자기 공항에서 강제구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해 당일 저를 석방시켰습니다. 구 공안검찰은 1997년 12월 3일 여전히 그치지 않고 두번째로 저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법부는 명백히 본서가 이적성이 없다고 저를 방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9일 구 공안검찰은 제가 [명예훼손죄]로 민행사로 고발한 월간조선, 한국논단 및 극우보수단체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저와 편집자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 표현을 제작·배포죄로 불구속기소 및 3개월 출국정지를 하였습니다. 그 불구속 근거는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와 대검 공안연구소의 자문교수들의 의견서가 유일한 참고자료였습니다.

그후 저와 편집자는 2001년 2월 2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3년 2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지속했습니다. 1심 무죄판결 이후 4개월만인 2001년 6월 26일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2003년 10월 9일에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 책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학생의 어린이 교재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찰이 발췌해 적시한 부분만을 내세워 국보법상 이적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민사재판에서도 2001년 9월 26일에는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의 1억 500만 원의 조선일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2003년 9월 26일 민사손해배상 최종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월간조선과 6년간 형사·민사 사건의 긴 싸움에서 완전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구 공안검찰은 사립학교법(제58조의 2 / 1항)상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근무하는 동원육영재단에 직접 공문을 보내어 해직압력을 넣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수협의회 동원육영재단은 이러한 검찰의 압력에 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외대 교수협의회는 “공안검찰의 강제구인장 발부는 부당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 동원육영재단도 검찰에 ‘관계없음’이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6년 재판기간 동안 학자로서의 삶도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법정출두로 인해 학교 정규강의를 빠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국보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발로 저는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민주평통 등 국·공립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에서도 모두 강제로 해촉당했습니다. 방북신청을 하였을 때 재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곤 하였습니다. 해외 여행마다 단수 여권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출국가능증명원]이라는 허락서를 받아야 하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곤 했습니다. 사회과학자로서 각종 언론이나 잡지에 발표나 기고할 기회를 기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2월 23일 서울형사지법의 1심 무죄판결 선고를 필두로 2003년 10월 9일 대법원의 최종무죄판결은 학자로서의 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학계와 우리 조국 통일운동에 조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기회에 구 공안검찰, 일부 보수언론, 정부, 언론피해자에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을 일부만 보시지 말고 이 책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본서의 일부만 강조해서 이 책을 이상한 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5·6학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공안적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것이 헌법상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백하고 적대적인 침해가 없는 한 교육학상 어린이들의 창조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이제 남북관계를 더 이상 1950년대의 냉전적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도 우리가 원하는 변화수준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나름대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과거의 피해의식과 선입견에 너무 집착하면 남북관계는 미래에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1990년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비대칭관계로 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이 북한에 대해 무역량이 180배, GNP가 25배, 국방비가 5배나 됩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국력차이가 50 대 1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명분상 내거는 하나의 조선의 논리와 남조선 적화통일론 전략에 너무 일치하지 않아 안됩니다. 체제존립과 생존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실제 북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북한관도 북한이 명분으로 내거는 선전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실제모습에 초점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6·15 공동선언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남북 쌍방이 말이 아니라 몸으로 상호간에 사실상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헌법상 국군통수권이자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대의 의장 대사열을 받았고, 북한체류시 국가원수로서 특권과 면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로서의 사실상 정치적 실체를 명백히 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에 있는 모든 냉전적인 법령은 이미 그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한이 상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화해하고 협력하자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각자의 국내냉전법령을 과감하게 개폐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정부는 이제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을 크게 개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1999년 8월 통일지원법을 제정하여 제7차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북한이해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냉전지향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 취지에 맞게 북한소개를 포함한 내용의 초등학교 통일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교육에는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념적 도그마로 인해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교육법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통일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책 내용 중 상당부분이 6·15 공동선언 이후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의선 복원, 금강산 관광, 비무장지대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 남북한간의 통일방안 접근에 대한 공동 노력합의가 그것입니다. 즉, 이 책은 미래의 통일세대인 우리 어린이에게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능력을 함양시키고 통일국가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공안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발자의 내용을 위주로 공소장이 작성되므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승소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검찰의 공소내용이 [월간조선]이 편파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감정내용도 이 서적에 대한 제작 과정이나 저자와의 직접 대화 없이 월간조선의 일방적 색깔론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부분에서 부정확한 부분까지 월간조선의 주장을 비판 없이 따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자의 성향에도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치밀하게 대응하면 반드시 승소한다고 봅니다.

일곱째, 검찰이 이적성 판단을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이제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 공안문제연구소 같은 공안연구기관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 예로 본 사건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내용은 월간조선기사와 거의 동일하고, 검찰의 공소장 내용 역시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3단위의 합작으로 본서를 이적 서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처럼 공안문제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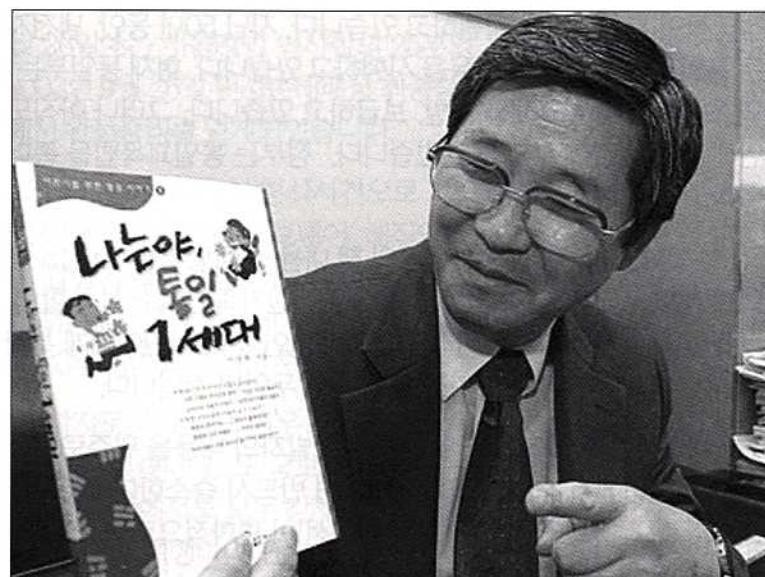
소가 이적성 판단을 하는데 중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이 사회과학서적을 감정하는 그 자체도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사상문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판단은 고도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사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하는 인적 능력에도 문제가 있으며, 동기관의 감정내용에서도 월간조선의 부정확한 기사내용까지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기관은 검찰의 비위에 맞게 감정해주었다는 인상을 재판과정과 재판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의해 2번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본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제작, 배포죄로 1997년 12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참고 근거자료로써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의 책감정서와 대검의 공안연구소 자문교수들의 의견서가 중요한 자료로서 첨부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공안문제가 발생할시에, 통일부가 흔들리지 말고 햇볕정책에 대한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의 일관된 화해정책 표명은 거센 냉전의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사건의 경우에 통일부장관이 국회외통위에서 보수적 의원들의 색깔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본서의 내용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준 것이 재판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아홉째, 우리언론도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다시는 저와 같은 학자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소모적 이념갈등으로 인해 현법상 보장된 학문,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제약으로 장기간의 심각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화해지향적인 보도와 취재를 하는 이념적 지평을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 의한 안보 상업주의의 이용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난 6년간 월간조선과의 싸움에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안상운 변호사, 류현석, 한승현, 박원순 변호사를 포함한 16명의 변호인단과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의 편파적 이적성 감정에 맞서 법정에서 저를 위해서 직접 증언을 해주신 서울법대 한인섭, 국민대 법대 장명봉,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토론회명 :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일 시 : 2004년 9월 22일(수)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주 최 : 국회의원 최규식 의원실

### ▶ 토론회 개요

10:00~10:10	개회	사회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인사말 : 천정배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최규식 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위원)
10:10~10:25	주제발제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대)
10:25~11:05	토론	정진상 교수 (경상대 사회학) 문성호 소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박광작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 윤 황 연구관 (공안문제연구소)
11:15~11:40	자유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11:40~11:55	질의응답	참석자
11:55~12:00	폐회	
12:00 ~	오찬	장소 : 국회본청 의원식당(2F)

# 국가보안법의 현존재, 그 프루크루스테스의 모순

- 공안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요컨대 본 문건에서 발견되는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고, (...)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을 수용, 지지하고 있으므로, '容共' 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공안문제연구소, '한청' 사건 감정서 중에서)

## 1. 들어가기

위의 인용에 의할 경우 현재 치열한 정치적 공방의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일단의 정파들은 이미 공안문제연구소로부터 용공분자로 낙인찍힌 셈이다. 그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동조에 해당되는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안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질서이며, 이 점에서 “공산주의 기타 국가안전보장의 저해와 관련된 사상, 조직, 이론 및 그 대책에 관한 문제”로써 공안문제의 개념을 틀 지우는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은 지나치게 편협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산주의라는 사상 내지 신념체계를 국가안전보장과 직결시키고 양자를 철저한 대립관계 속에 고정시키는 억압구조이다. 즉, 우리 헌법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의 정신적 자유는 최소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상과 학술의 자유를 기본권적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운영규

칙 제2조는 기본발상의 차원에서부터 사상과 학술을 국가안전보장의 적이라는 구도에서 차단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과 정향(orientation)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특히 남북대치상황에서 초래되는(혹은 초래된다고 주장되고 있는) ‘안보위협’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구조 또한 ‘반국가단체’를 특정하는 특별법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법제적 틀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반국가단체’의 ‘안보위협’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주체들의 정치적 신념 혹은 사상체계를 준별하기를 거부하는 국가기관-공안기관-에 의하여 그 반인권적, 반법치적 원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재생산과정의 주요한-그러나 결코 중핵적일 수는 없는- 부분을 공안문제연구소가 차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우리 헌법의 이념적 지향에 부합하는 당대의 시대요청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 반법치적 정권안보법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공안체계의 주변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운용을 견강부회격으로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공안문제연구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그 운용이 그나마의 ‘안보목적’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천착해 보는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공안문제연구소에 관한 간략한 서술

공안문제연구소는 제5공화국까지 남영동 대공분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내외정책연구소가 1988. 10. 20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변경, 설치되었고 1995. 12. 7 서울경찰청내에 있던 보안문제연구소와 통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임무는

1.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논리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의 제시
2. 국내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3. 공안관련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개발 및 자문
4.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그 업무의 60%이상이 제4호 소정의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sup> 또한 실제 연구업무에 투여될 수 있는 직원은 1999년 현재 연구원 16명 정도이며

이들이 연간 7,731건(2001년)에서부터 6,665건(2002년) 정도의 문건을 감정하며 올해에는 7월까지 4940건의 문건을 감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 공안문제연구소에 관하여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달리 없다. 단지 1998년 기준 예산은 정부예산이 622억원이며 외부용역수입은 전혀 없으며, 연구의 고객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대검찰청 등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sup>2)</sup> 한마디로 국가기관이자 감정의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그 존재와 조직과 업무과정이 철저한 비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

1) 이는 이 연구소의 연구부가 제1부, 제2부 및 연구분석과 등 3개의 분과로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분과 모두가 “공안관련 문서 및 출판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어 있음에서도 잘 나타난다.

2) 대우경제연구소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중앙행정기관경영진단” 1999: <http://university.seoul.co.kr/down/T021/End.hwp> (2004. 9. 20 방문)

작용이 그러하듯 이러한 비밀주의에서 자의적·편의적·전단적 권력행사가 이루어진다.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는 이 연구소의 감정업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감정'의 기준이 공안적인 냉전논리에 근거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표현물 전체의 맥락보다는 몇몇 문장을 문제 삼아 감정의 결과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감정결과에 따라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2004, 361면)

요컨대, 공안문제연구소 자체가 국정원, 기무사 및 대검 등의 소위 '공안기관'을 주고객으로 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감정서를 주문생산하는 구조만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스스로 공안권력의 한 축에 서식하는 주변적 기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 뿐이다. 즉, 이 주문-생산의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 연구소의 업무행태 자체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어떠한 접근통로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 생산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는 한편, 그 존재조차도 국가보안법의 운명에 달리게 되는 파행성을 겪게 된다. 침대와 칼로써 전횡을 일삼은 프루크루스테스는 약탈의 주체이기라도 했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침대와 칼은 가지되 약탈적 법률에 기생하는 종속적 존재에 그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구체적 사안에 있어 그것을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통치·정치권력→검찰·사법권력→국정원·경찰·기무사권력으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보충적 정당성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작업을 통하여 무엇이 국민들에게 허용되며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은연중에 공표하는 일종의 국가검열의 기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절을 바꾸어 살펴 보자.

### 3. 공안문제연구소 – 그 실체적 문제점

#### 3-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법리 – 중대·명백한 위험에 대한 인식부재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는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그 직무영역에서부터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기무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문건 감정 및 분석의뢰를 받은 표현물에 대해 좌익성, 친북용공성향, 용공성, 반정부적 성향, 문제없음이라는 감정평가"를 내리는 것이다.<sup>3)</sup>

여기서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의 효과로서의 법금(法禁)이라는 처분적 강제는 헌법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가적용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공안기관은 이 헌법적 통제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안문제연구소를 이용하고 있고,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한다.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지배하는 법리에 의하자면 어떠한 표현행위가 법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호법

3) 위 국가인권위원회편, 보고서, 355면.

의 중대성, 위험의 명백성·현존성의 요건이 요구된다. 혹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논의구도에 따라 현존성의 요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내용이 최소한 국가안보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때 그 표현에 대한 국가적 제재가 가능한 것이 헌법의 이론이며, 민주적 법치가 이루어지는 헌정국가의 기본운용원칙이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러한 헌법적 제한의 틀(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식조차 없어 보인다.

실제 공안문제연구소가 공안문건을 감정하면서 사용하는 분류기준인 "좌익성, 친북용공성, 용공성, 반정부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감정대상인 표현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한 정치세력 즉 "반국가단체"의 주장과의 일치여부 혹은 기존의 체제나 정권 혹은 기존의 정치세력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내리는 도구적 용어에 불과하다. 예컨대 '좌익성'이라는 분류기준은 "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개념규정되고, 용공성은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수용, 용인, 동조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친북용공성'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 서기만 하면 해당되며, 이러한 좌익성·용공성·친북성이 없더라도 현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표현은 반정부적 성향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극히 형식적인 준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나 그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관계양상, 표현자와 수용자의 의도나 인식정도, 반론과 교정·비판의 가능성여부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적용된다. 소위 막걸리보안법과 같은 유추·확장적용의 문제나, 학술·예술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례들은 그 단적인 예시이다.

더불어,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조차도 그 실질적 내용/요건이 특정되지 못함으로써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컨대,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면 좌익성향이고 수용·용인·동조하면 용공성향인데, 여기서 선전선동과 수용·용인·동조의 차이—특히 표현형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판단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암시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문건의 범죄성은 문자 그대로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결정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sup>4)</sup>

표 현 물	감 정 결 과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우리 민중은 백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을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조국해방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강인하게 분출되었고 일제 패망과 조국분단 이후 통일을 향한 장엄한 투쟁행렬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4월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의 뢰악별 아래 악동했던 전국적 민주화대투쟁으로 우리 역사는 대중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왔으며 7·8월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민중의 영웅적 신화는 재현되었다.<대구경북연합강령전문>	주사파 주동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산하 대구경북지역조직의 강령규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전통 계승 운운하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며 반체제 연북 통일투쟁을 결의 선동하는 친북용공 유인물(2000. 1. 13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김용규)

4) 전계보고서, 360면.

여기서 「표현물」의 표현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감정결과이다. “북한식 민중사관”의 실체가 제시되지도 않은 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전통”에 대한 학계의 논쟁여부에 대한 분석·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이 왜 친북·용공과 직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감정의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는 고통분담 논의와 구조조정 정책을 부정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현 체제의 통제권을 빼앗고 노동자 민중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을 비유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용공성 문건으로 판단됨”(2002. 2. 4 공안문제연구소 오문균)

[한청의] 김정일의 답방 환영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 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은 김정일 답방활동을 친양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용공성향으로 판단됨(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정원영, 2002. 2. 26)

체제의 비판이나 김정일 답방축구 등의 문제가 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공성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등의 문제의식조차도 없이 ‘그냥 이적의 고무·찬양·동조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고무·찬양·동조의 표현이다’라는 식의 감정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위 대구경북연합강령에 대한 감정의견은 이 점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즉, 그것은 주사파가 만든 문건이기 때문에 주사파적 성향 즉 친북 용공 유인물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인 「중대·명백한 위험」의 법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통제법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사상의 여하가 아니라 그 표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의 경증과 그 발생가능성의 정도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전혀 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공안문제연구소의 반민주성, 몰현법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배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지배의지를 국가이데올로기로 고착시키거나 그것으로 가장시키고 이에 반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의 존재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국가검열의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sup>5)</sup>

환언하자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체제가 원치 않는 세력, 혹은 지배정치권력이 원치 않는 비판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일벌백계의 위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의 침묵상태로 퇴각해 있도록 통제하는 일종의 사상공작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 3-2. 감정의 대상 – ‘책임분산음모론’

통상적으로 감정은 법관이 실제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에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증거조사의 한 부분으로서 사실인정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안문제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좌익·용공·반체제성의 판단은 결코 감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판단은 그 자체가 “찬양·고무·동조”的 여부를

5)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이 인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함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일정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사상을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일된 혹은 확정된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존재하는 기준이란 국가안보의 이름을 빌린 정권안보의 의지에 힘입어지는가의 여부일 따름이다.

6) 이 점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창출된 국가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반증된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기능 중의 첫번째가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이론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 개발”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자적 이론을 내자는 연구성과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음을 역으로 이 연구소의 주된 기능이 사상통제에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름지우는 법판단이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표현이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표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실의 법포섭의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법관의 몫이 되는 것이며, 이 부분에서의 전문가는 다름아닌 법관료인 법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혹은 예비적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또는 사전적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문제를 다른 제3자에게 물어보고 할 것은 아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문제연구소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적 법판단까지 대행하고 나서는 까닭은 무엇인가? 혹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이 자신이 하여야 할 판단을 유보한 채 그 판단을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하고 그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법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폭력성을 은폐·엄폐하는 최적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공안문제연구소와 같은, 제3자로서의 외관을 가진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로부터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전문가”적 의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과 그 적용의 결과가 “정상적”이었음을 가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검찰 등의 공안기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어떠한 표현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공안문제연구소와 같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 판단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최소한 외관상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법집행작용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계기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법판단이 이루어진다.

대체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개발한 논리 중의 하나가 오늘날 국가가 민주화되면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나름의 일리는 있을지도 모르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 주장에서는 묻혀 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제1단계는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구속수사의 방식을 취하면서 그 혐의자 혹은 피의자의 인신을 제약하고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가한다.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공표 등의 방법으로 그 혐의자·피의자를 ‘빨갱이’로 낙인 찍음과 동시에 전국민을 상대로 위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발적 자기검열의 체제를 이루어 놓는다. 법원의 무죄판단, 혹은 집행유예판단은 이러한 제1차적 법집행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례가 적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이 적어졌다는 사실의 징표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1차적 법집행의 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의견은 사실상 법원의 법판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인신제약·인권침해를 좌익성·용공성의 판정으로 일단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예심

7) 이런 맥락에서 염밀히 보면 공안문제연구소가 판단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용공성 여하 등이 아니라 그 표현이 가지는 위험성의 정도, 그리고 그 발생가능성의 정도여야 한다. 이는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지는 예비검속의 정당화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은 그 외형을 감추고 국가안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의 뒷면으로 물러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감정의견은 법관이나 검찰이 국가보안법상의 법판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즉, 그것은 소위 “공안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찰이 체제문제에 대한 적극적·능동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서도 유죄판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이나 검찰은 정치권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체제문제 혹은 시국관련문제에 관한 한 법판단부분을 팔호 속에 집어넣고 이를 공안문제연구소와 같은 “제3자의” “전문가적” “객관성”을 가장한 기관이 내리는 이데올로기적 판단 혹은 정세적 판단으로 대체하거나 중당해 버리는 일종의 교묘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시국사건에서의 판결문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의견이 그대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공소장 기재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으로 복제되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메카니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표현물—및 그 표현주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주체와 그 정치적 판단의 정교화작업을 감당하는 기관, 이 판단을 법리적으로 정서하는 기관, 그리고 이렇게 정서된 법리를 판결문으로 재생산하는 기관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감당하는 체제,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생성해 놓은 “공안체제”인 것이다.

#### 4. 공안문제연구소 – 그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하지만,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단상황을 빌미로 체제유지를 기획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전단적 국가폭력의 행사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한, 그 폭력에 정당성의 외피를 씌워줄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게 된다. 실제, 그간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하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찬양·고무·동조”的 표현물인가의 여부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감정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적지 않다.

최근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민주이념연구소’가 대검에 설치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는 체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왜곡시켜 놓은 법치주의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함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제2 절에서도 암시되었듯이, 그 연구소가 가지는 철저한 비밀주의와 폐쇄성, 그리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독단성·자의성의 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다. 여기서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그 감정자의 “전문가”적 자질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즉,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감정이 객관적 진실로서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감정의 업무를 위탁 혹은 의뢰받은 자가 그러한 감정을 함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정도의 인격을 갖추고 있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있거나 혹은 그려한 신뢰를 보낼 정도의 징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근대국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전문직의 경우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자격부여의 요건으로 삼고 나름의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

기 위한 통과의례를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전문가집단을 통해 그 윤리강령을 집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 감정의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신뢰의 이면에서 구축되는 동업자간의 견제와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학회나 학술토론회 혹은 논문의 발표, 재훈련, 업무평가 등의 기회를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경험, 인품을 구비할 수 있는 계속적인 자극요인을 마련함으로써 당해 전문가가 자기만의 논리에 함몰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으로써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외부적 검증과 통제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구축될 때 비로소 그 감정은 전문가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또한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는 그 인적 구성에서부터 업무수행의 절차·과정, 그리고 업무수행–감정평가–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감정의 결과까지도 철저한 비밀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가 촉발되는 과정 또한 검찰·국정원·경찰 등의 공안수사기관–공안문제연구소의 배타적·폐쇄적 용역체제로 이루어짐으로써 외부에서 이 감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과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도 제공되지 못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예컨대, 학술적 전문가로서의 교수가 어떠한 표현물에 대한 감정의견을 작성·제출하는 것과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교수의 경우 그가 감정에 임하면서 사용하는 평가기준들은 그의 학술연구과정에서 일단은 검증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연구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이나 학술의 과학성, 객관성, 보편성 등에 대한 부단한 검증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의 감정의견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최소한 학계에 대하여는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외부적, 학술적 혹은 과학적 검증의 기회를 갖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 평가의 기준들을 외부–학계나 시민사회 등–에서 일반화되고 검증된 어떠한 준거로부터 획득하기 보다는 철저한 비밀주의와 폐쇄주의에 입각하여 스스로 그러한 기준을 생산해낸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생산된 감정·평가의 기준들에 대한 외부적 접근이나 검증, 비판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이념적 자급자족의 체제를 구축해낸다.



여기서 더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러한 이념적 자급자족의 체제가 순수하게 공안문제연구소의 차원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정되지만 하여도 공안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모습보다는 나은 편이 된다–, 수주기관인 공안기관의 요구–더 나아가서는 정치권력의 요구에 종속되는 구조 속에서 그러한 폐쇄적 논리를 계발·유지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모든 이데올로기적 판단기준 혹은 가치관련적 판단의 기준들이 시민사회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담당자의 의지와 욕구에 종속된 채 그것의 재생산결과로서 양산되는 한편 그 작동과정조차도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차폐된 폐쇄공간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은 결코 ‘전문가적’ 평가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는 그것이 객관적 검증을 거친 과학적 보편성을 지닌 평가인 양 호도되고,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의 폭력을 대리행사하는 통로가 확보된다.

현대 국가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굳건하게 실현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안보의 논리가 가장 비민주적인 폐쇄적 비밀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개별’하고 적용하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니라 사상의 완전독점시장을 구축하고 그나마도 비밀주의와 폐쇄주의로 일관하면서 모든 이념논쟁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장악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공안문제연구소와 공안기관, 법원의 연합체—은 그 어떠한 대안도, 대항도, 비판이나 성찰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유일자(The One)가 되어 버린다.

## 5. 나가면서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였던 두 개의 지배이데올로기 즉이 바로 안보와 성장의 논리였다. 개발독재론으로 대변되는 불균형성장정책은 국가적 특혜를 중심으로 정경유착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굳건한 지배계급이 하나의 신분적 지위를 가지고 구축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안보 이데올로기는 여전한 남북분단의 현실을 빌미삼아 의연히 통치의 내연을 구성하는 주요한 권력요소로서 남아 있게 된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세력들이 새로운 권력계기를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그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최소한 이들에 있어서는 국가적 권력이 생동하는 최적의 상징이자 틀이기 때문이다.

혹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의 지향점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지적과 그 철폐에 쓸려 있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국가보안법간의 긴밀한 밀월관계를 고려한다면 후자의 폐지는 전자의 종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한편, 의연히 남아 있는 반인권적·반민주적 권력행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주요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자못 논외로 제껴졌던 것이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충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의 철폐운동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그 한 본보기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결락지점을 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자신의 침대와 칼로써 행인들을 처단하는 프루크루스테스처럼 기능한다고 해서 그를 응징하는 테세우스의 출현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루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탈을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안세력에 기대어 생존하는 권력주변부의 기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연구원 십 수 명에 불과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아



주 작은 규모의 이 기관에 대하여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 자체가 지나친 낭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재로 인하여 생명력을 획득하고 책임의 분산을 도모하는 공안기관의 조직논리에 의존하여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이 공안문제연구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공안문제연구소의 폐지에 선행하여 요청되는 당대의 최우선과제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존재와 그의 작동과정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폭력성, 자의성, 나아가 반인권성과 반민주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최대의 징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혹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세력을 처단하고, 국민들 사이의 불만과 불평을 겸멸하고, 국민의식을 ‘순화’ 하는 최전선에서 기능해 왔고<sup>8)</sup> 현재도 기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려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허구적 은폐술로써 국민의 안보의식을 조종하는, 혹은 재단하는 기관으로 존속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첨병으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응징은 시민사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8) 이 점은 첨부하는 발제자의 원고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당시 발제자는 부산의 모 신문사에 고정적으로 시평을 기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비판한 원고를 보냈다가 일언지하에 “잘려 버렸다.”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이 용공이나 아니나의 문제보다 더 큰 파장으로 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 겸멸의 의식이며 소위 사회지도층을 통하여 이 자기겸멸의 의식이 반강제적으로 전파·확산되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과학연구원장)

### 1. 공안문제연구소 감정서의 실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우

- 1994년 7월 11일자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동렬의 감정서(12쪽)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분석과 총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석에서는 대표적 실례를 들어 문제내용을 여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맑스주의(공산주의) 노선을 미화찬양하고 이를 정당화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주장은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체제를 정당화하며 저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사회과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새로운 사회과학을 창조하는데 기여한 것은 실로 엄청났다. 그것은 지적으로는 물리학에서의 갈릴레오나 생물학에서의 다윈에 비교할 수 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좀더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넓은 사회질서에 속하는 모든 기득권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넓은 사회질서의 희생자들의 모든 열망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실상 자연과학분야의 어떤 위대한 발견보다도 더 지대한 것이었다.(23-24면)

최근에는 논란에 해제되고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국가가 붕괴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오류에 있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다.

또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 보는 것은 더욱 순진한 생각이다.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모순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오늘날,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사이의 모순이 더욱 침해해지고 있고 신식민지에서는 계급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모순이 세계적으로 증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마르크스주의 이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25면)

마르크스가 독일 고전철학을 비판하면서 서술한 이 체제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한 형태로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고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사회운동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49면)

둘째,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 또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등으로 왜곡 규정하며 비방하고 있다는 점이다.(167-169면, 234-237면, 342면, 377면, 397-398면) –이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왜곡 부각시켜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혁명의 정당성을 이끌어 내려는 단초임을 지적한다.

셋째, 현 정권(김영삼 정권) 및 현 정권의 개혁시책을 왜곡 비방하며, 현 정권 타도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토대로 일단 평가해 보면, 김영삼정권은 파시즘체제의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강화된 '이완된 파시즘체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화를 앞당기는 최선의 길은 종속 파시즘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의 강력함 힘으로 뭉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민중이 누려야 할 '자유민주주의적 권리'를 억압하는 위장된 파시즘체제를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244-245면)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해 김영삼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하여 한국경제의 구조 모순을 개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경제의 본질은 토지자본과 관료자본에 의한 기생성을 악화시켜 산업독점자본을 강화하는 자본합리화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정부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협력 강화는 결국 재벌주도경제로 귀결될 것이고 고통분담만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심화될 전망이다. (376면)

넷째, 남한사회 법체계(사법부, 검찰, 경찰, 안기부, 군 등)가 권력유지를 위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민중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을 탄압해왔다고 비방하며, 이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263면, 274-277면) – 이는 결국 현 정권의 법체계와 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과 역학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법체계는 지금까지 권력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민족민주운동을 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 '법치국가'라는 구호로 표상되는 법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법파괴행위는 은폐하면서 대중을 독재적 '법질서'에 충실히 만들어 왔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의 이데올로기도 미국의 반공기지(263면)

다섯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여 당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어 실천을 고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단계 민족민주운동이 실현해야 할 전략적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의 달성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하의 독점자본주의 사회로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로 분립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형식으로는 한국의 군부를 비롯하여 독점재벌 등의 지배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주도권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군에 의한 한국군 작전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핵심이 내용의 하나인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를 통한 내정간섭으로 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미국유학생을 통한 학문의 지배, 영화와 방송 등을 통한 문화의 시장의지

(391면)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의 중요모순은 민족모순 즉 한국민족과 미국제국주의 및 그 예속세력간의 모순이 되고 당면한 전략적 과제는 식민지성과 예속파시즘의 극복 즉 민족해방=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의 달성이다.

당면한 국면에서 반파시즘 민주화 투쟁의 중점은 민주정부 수립투쟁과 반민주악법 폐지투쟁에 있다  
.....중략.....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2500만 노동자계급(가족포함), 600만 농민층 등 민중이다. (394-395면)

여섯째, 북한과 일치하는 맥락으로 한국사회의 근현대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동학혁명을 '갑오농민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음 (62-63면)

- 이는 북한 '역사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2권 753-754면 참고

#### 2) 3.1운동 실패원인 규명을 지도조직역량 부재 및 전술부재로 들고 있음 (69-70면) 이 역시 북한은 3.1운동을 영 도할만한 혁명적 계급과 혁명적 당이 부재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 '역사사전' 2권, 78, 79면 참고

#### 3)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부각시키고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주도의 항일 무장투쟁을 과대 미화, 왜곡소개하고 있음(북한의 역사조직인 조선광복회 활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74면, 81면, 83-85면 등) 이 역시 북한의 '조선전사' 16권-22권의 맥락과 일치함

#### 4) 해방직후 미군정과 우익진영을 '친일파, 반민족세력'으로 매도하고 좌익진영의 활동을 새로운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미화하고 있음(26면, 93-97면 등) 이 역시 북한 '조선통사' (역사연구소) 하 권 22장 1절 해방직후의 조선정세 부분과 일치함

#### 5) 해방직후 좌익분자주도의 무장폭동인 대구 10일 폭동, 2.7투쟁, 제주 4.3사건 등을 외세와 독재권리에 항거한 민중항쟁으로 미화하고 있음 (97-100면) - 앞의 책 참고

#### 6)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을 남한 당국의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등 민주변혁과제의 미진과 외세점령 등에 따른 계급모순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된 필연적 결과로 해석하고 있어, 결국 북한의 전쟁도발을 정당화해주고 있음(104면) 이는 북한조선통사(하) '조국해방 전쟁' 편 참조

- 결국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한 북한측 사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 남한측 정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임.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문건은 결국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마르크스 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공산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 책자는 좌익 이적성문건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거두절미, 아전인수, 이현령비현령에 의한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

-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집필 목적을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감정서는 '이적표현물'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 2. 공안문제연구소와 경찰, 검찰 및 안기부(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및 안기부는 무수히 많은 '이적표현물' 중에서 먼저 사람을 지목한 다음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다.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우, 장상환, 정진상 교수는 김영삼 정부 초기 이른바 사정정국에서 지역토호, 대표적으로 악덕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언론인 <진주신문>의 지면을 통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컬럼을 썼다. 진주에서 오도십적(五盜十賊) 중 한 명으로 지목되던 모 인사는 진주신문사와 민교협 회장이던 장상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대치하다가 '한국사회의 이해'를 지목하여 안기부를 통해 사건을 만들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1994년 5월 24일자 감정서와 7월 11일자 감정서 2건이 있는데 전자는 안기부 모인사의 청탁으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감정서로 추정된다.

-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안 사실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3개월 동안 11명의 공안부 소속 경찰이 매달렸는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능력이 없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경찰의 경전과 같은 것이었다.

- 만 하루 동안에 걸쳐 진행된 검찰 심문에서도 담당 검사가 '한국사회의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사의 지적 수준을 잘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검사에게도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금과옥조였다. 공소장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을 주장한 거의 모든 대목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 3. 공안문제연구소와 판사



- 현행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이적표현물 판단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도 자신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판단이면 좋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그 기준이 된다. 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책의 원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보통의 판사들은 업무의 과정 등의 이유로 원래의 책을 읽기보다 감정서에 의존하기 쉽다.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창원지법 앞에 개업 중이던 차정인 변호사는 책 30권을 급히 구하여 창원지법의 모든 판사들에게 돌렸다. 이는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에 대해 판사들의 건전한 상식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8월 30일 당직이었던 최원석 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창원지법의 모든 판사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를 감정서보다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 국가보안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처벌할 때에도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판단을 돋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을 왜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4. 공안문제연구소와 자유민주주의

-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이적표현물을 낙인찍는다.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와 동의어이다.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신체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학문의 자유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를 감정한 유동렬은 최근에도 <공안연구>에서 10년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 '한국사회의 이해'는 10년전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지금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감정하면 여전히 이적행위이다.
- 사상과 학문을 국가기관이 감정하는 것은 중세기의 종교재판과 다를 바 없다. 세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중세기적 사상탄압에 대한 승리였다.
-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안문제연구소는 냉전질서가 만들어낸 이 사회의 기생충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공안문제연구소는 해체되어야 한다.

## 공안문제연구소와 국회의 역할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위해 운영하다가 정작 일본마저도 포기한 단일의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해방 후 60년이 다 지나도록 고수하고 있다든지, 고졸자를 4년 동안 병역 등 온갖 특혜를 주어가며 경찰대학에서 교육시켜 졸업 후 곧바로 간부계급에 임용한다든지, 경찰의 내부 여론을 집약할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경찰협의회나 경찰노조 등을 일체 불허한다든지, 같은 준사법기관이면서도 '검찰의 노예'로서 수사권 행사에서 철저한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다든지, 경찰 아닌 군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찰에 들어온 전의경들로 하여금 동료 젊은 이과 노동자의 집회와 시위를 막도록 내몬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일부 사례들이다.

우리나라 경찰이 공안문제연구소라는 사상감정서 대량생산기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옥죄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과학 및 사상의 발달을 저해토록 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찰제도 품목에서 예외가 아니다.

## 1. 국회논의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 이를 문제로 삼기 시작하여 그 근거와 예산실태를 따진 바 있다. 당시까지 엉뚱하게도 서울시 예산으로 존립해오던 공안문제연구소는 다음해에 이르기 까지 내무부와 경찰청 및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야당측의 끈질긴 추궁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경찰 자체 예산으로 바로잡히게 되었다.

이후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1993년 이후 안기부법 개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 통제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행하는 정보보안 기능 및 공안문제연구소 업무에 대해서는 행자위(당시 내무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나 문제점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더불어 공안문제연구소가 소멸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일반 수사상 감정과 증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과수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에서 이 공안문제연구소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스스로 제도화함으로써, 그 약용 가능성을 감시토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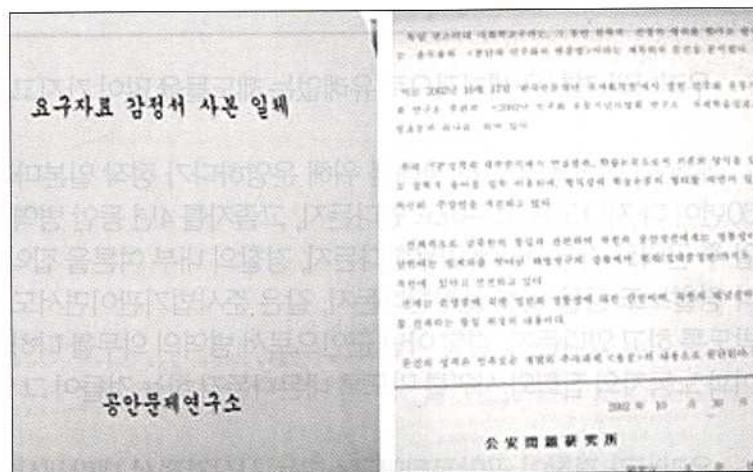
## 2. 누가 사상감정서를 발급하는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동시에 공안문제연구소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으면서도, 그 적용이 신중하거나 사건수가 줄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공안문제연구소 인력 및 사상감정 원칙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검의 고문수사와 유사하게,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 측이 경검 및 국정원과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사상감정서도 짜맞추어 생산한 전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때 탈북인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특수성을 가진 사상들을 북한 사상의 잣대로 심판하고 처벌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뜻한다. 훗날 사상사가 들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나 유신체제론보다 오히려 현대의 진보적 사상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현대 한반도에서 창조된 가장 독창적이며 결출한 한국사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사상체계의 창조발전을 가로막은 주범들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바로 이 공안문제연구소를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 대학 석박사 수준의 연구원들이 중견 학자의 이론을 재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이런 사상감정서를 대량생산토록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 3. 향후 대안과 관련하여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있어서 그 폐지 권한을 가진 국회가 거꾸로 가장 거대한 보안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 및 공안문제연구소의 잘못된 국가보안법 고수 자세를 제대로 추궁하고 제어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개개 행정자치위원회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게 만들 우려가 크다.

경찰이 국정원이나 검찰보다 훨씬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간첩조작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을 양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다를 게 별로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을 국회가 마냥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거꾸로 전·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 측에서도 이제는 과거에 저질렀던 짜맞추기식 사상감정이나 그 결과 초래된 엄청난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데 거꾸로 공안문제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은 오히려 직장의 보전이나 구직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학문과 사상의 자유로운 활동들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 추세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의 실업문제가 대두한다면 이것은 국가보안법 고수나 공안문제연구소 온존 차원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재교육' 차원에서 풀어야 할 일이며 경찰 아닌 노동부나 교육부 등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 토론회 주요 발언록

(9월 22일)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윤황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 초기발제(한상희) 및 토론문(정진상, 문성호) 발언 제외

### 박광작

세계에 유례 없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안문제연구소 서무과장 인

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연구비 1년에 4,980만원이다. 적은 예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직이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독일 형법 86조는 오히려 국내보다 강하다.

통일 독일이전에는 강력한 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실행 장치가 있었다.

독일헌법 18조에 기본권의 상실조항이 있다.

자유민주의 기본권을 공격하는 자는 이 기본권을 상실한다.

독일형법 138조 범죄불고지죄에도 있으며, 국가를 위해 적용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만 이렇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세계적 추세를 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 윤황

저는 학문을 하면서 좌우익을 넘나들고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핵심적이고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다.

15년동안 학회활동을 하고 북한을 연구해왔다. 연구소 들어온지 3년 7개월이다. 그 전에는 북한연구에 전념하였다. 프루크루크테스는 악법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는 비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공안문제연구소가 적용한 것은 무리이다. 이 발제문의 목적은 국보법의 철폐가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적합하다는 전제, 즉 폐지를 전제로 깔고 있는데

전제부터 잘못돼있다. 국보법 철폐는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로 이어지고 있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

경찰대학교 공안문제연구소가 정식명칭이다.

경찰대학설치법 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다. 설치근거에서도 국가보안법과 다르거나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의 임무상 다르다.

발제문의 논지는 감정문을 가지고,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임무근거는 9가지 임무를 하고 있다. 첫째 공산주의 이념 비판 대응논리 제시, 국내공산주의 실상 문제점, 공안관련 사건에 대한 감정,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연구자 홍보물 간행물 편찬 등인데, 9가지 중 하나가 증거물에 대한 감정분석이다. 이 역할을 해왔으나, 극우보수고, 정권의 하수인, 쓰레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

없어지면 좋다. 해달라. 보안법 폐지하고 공안문제연구소 해체해달라.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의 인간해방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해달라.

경찰대학 학생수 아는가? 학장을 아나? NSC 공개하나 모른다.

경찰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발제문을 읽어보니 공안문제연구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공안문제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발제문으로 높게 평가한다.

공안문제연구소 감정이라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관이나, 국정원이 이용한다고 하나, 그런 조직과 연계돼있지도 않거나 우리가 만든 감정서를 경찰이 가져가고, 법관이 가져가고, 국정원이 가져가서 이용한다. 그 사람들 마음이죠.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9가지 업무중 한 가지 감정 업무만 드러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이런 업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틀속에서 감정업무만 없애면 공안문제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고, 비밀주의, 공개주의 문제점만 고치면 아주 귀중한 발제문이다.

감정원칙 16조에는 감정은 연구관의 전문적 판단, 양심, 공명정대, 신속이라는 감정원칙을 가지고 감정을 담당한 연구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지금 인용된 것은 일부지만, 논거를 제시하는 감정도 있다. 재판도 법관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지 않나?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평가성향을 분류하고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에 의해 국보법 위반사항 감정을 하고 있는데, 분류기준은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나, 북한관련 문건이나에 따라 있지만 기준은 책 한권이다.

우리가 꼭 좌익용공만 잡은 것 아니다. 문제삼기 어려움, 문제없음, 이것도 잡아낸다. 문제없음이 더 많다. 그런데 통계 잡고 이럴때 좌익용공만내서 실질적으로 정 교수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길 기대하고, 나올 것이라고 믿는데, 정교수님같은 분만 잡는 것 아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지.

공안문제연구소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냉전체제이고 분단상황이다.

간단히 중국은 이념상 아직도 공산주의다. 한반도 주변에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국가 정당이 지배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중적이다. 우리는 계속 가고 싶지만, 북한이 이중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60%가 감정업무 맞습니다. 저희 잠도 못자고 죽습니다. 저희도 떳떳하게 이념문제 연구하고 싶고, 공안문제연구소 다닌다고 얘기하고 싶다.

국가안보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해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필요하다.

루소의 말대로 사회적 질서는 신성한 권리로서 다른 모든 것의 기초이다. 이 권리의 자유에서 나오지 않는다.

## 한상희

감정의 임무를 공안문제연구소라는 폐쇄적, 비밀적인 기관에서 담당하고 사상통제를 한다.

전대법학연구소에서 국가이데올로기를 연구할 수 있다. 감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 잘못 이용돼 왔다는 것이다. 그것을 교정해달라는 것이다. 연구활동하겠다는 것 누가 말리나? 세종연구소같은 국가이데올로기 연구소가 있다.

현재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만 해소된다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법을 단순히 베끼기 보다는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봐야 한다. 독일에 법이 있음에도, 미국이 패트리어트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만 지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 정진상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바이마르공화국 같다는 판단이라든지 하는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기본적으로 독일에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된다. 독일역사는 공산주의와의 대결보다는 히틀러체제이다. 국가수호관련법이 만들어진 것이 거기에 대한 공포감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권 상실조항이 독일형법에도 있다. 독일형법에 몇 가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한 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여기가 독일이라면 공안문제연구소가 '한국사회의 이해'와 같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책을 법원에 고소해서 이 책의 저자들을 기본권을 침해하겠는가?

독일헌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나 국보법이나 공안문제연구소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반공주의다.

(윤황에게)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큰 업무를 해온 감정문제 때문인데. 감정문제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유죄판결을 냈는데, 유죄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무죄를 기대하다니, 틈을 타서 우리보고 도와달라고 하지말고, 아까 그런 말씀이 진정이라면 스스로 해방할 수 있죠. 내부에서 제기할 수 있지 않나?

감정건수가 수만건인데, 하루에 평균 2건. 잠을 못잘지경이라고 하는데, 감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 분위기라도 조성된 만큼 자구책으로 내부 성명이라도 내야하지 않나?



## ▶ 플로어 질문 : 공안문제연구소 서무과장 이승우 경장

감정처리 건수에 대해 말하겠다. 한겨레에서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통계는 맞다. 처리건수 중에서는 중복된 접수문건까지 포함, 1년에 5천건을 했다면, 그 중 45%가량은 여러기관에서 중복요청한 것.

평균 1.5건에서 2건처리하는 것은 맞다. 60~70% 감정처리 한다. 30~40%는 공안세미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실상 경찰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토론하고 책을 만들고 한다.

## ▶ 플로어 질문 : 건국대 이호영 학생

윤황연구관 말씀 중에, 감정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진행하면서 경찰에서 감정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감정기준이 책 한권으로 있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들었다.

두번째는 재판하면서 밝힌 것 중에 감정을 할 때 본인 책임하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 재판에서는 그런 입장이 전혀 없다. 책임을 경찰청에 넘기는 듯한 발언인데,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밝히면서 왜 정보공개 청구재판에서는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다.

1년에 7,8천건 한다. 국보법 관련 증거물 감정이다. 작년 120여명 연행되었고, 한총련 90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2,300명밖에 없는건데. 도대체 7,8천건 어디서 구해다가 감정을 하는건가?

## 윤황

무죄냐? 유죄냐?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감정업무에서 유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만큼 우리 연구관들은 검·경·판사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한다. 문건, 접수 받는다. 그럼 각 경찰서, 국정원 일부에서 온다. 우리 개인한테 오는게 아니고, 우리는 서무과에서 공식문서로 온 것만 받는다. 왜 많아졌느냐?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 많아졌다. 서무과에서 배부를 한다. 기일이 보통 7일이내인데, 막 기계처럼 하는 것 아니다. 두꺼운 것도 있지만, 한장짜리 두장짜리도 있다. 2~30분 읽어보고 분석이 필요하다 하면 심층으로 들어간다.

감정기준 공개는, 경찰대학 직제속에 들어가 있다. 경찰대학 안에서 직제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고, 이번에 나온 것은 공안문제연구소를 학술세미나로, 공식 요청문건을 받고, 결제라인을 거쳐 나온거죠.

## 이승우 서무과장

최근에 친북사이트가 많다. 보안기관에서 친북사이트 검색하다보면, 한장짜리 두장짜리 무지 많다. 한장짜리가 90%이다.

### ▶ 플로어 질문 : 박성희 민가협 간사

공안문제연구소는 연구소 자체로 토론이 돼야 할 것이다. 많은 부분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얘기한다. 공안문제연구소 자체의 얘기가 빠져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거의 없다.

너무도 존재가 가려져 있고, 알려고 해도 심지어 이적표현물을 읽지 않으려고 목록만 보려고 해도, 3급비밀이라 볼 수가 없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은 국가가 주장하는 한 가지 생각을 강요한다. 화장실의 낙서를 백 사람이 보면 백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예술작품까지도 감정을 내린다. 우리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보법 폐지돼도 공안문제연구소는 국보법 문제와는 다르게 시민사회가 토론 논쟁을 통해서 이런 기관을 존치시킬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전제하에 공안문제연구소를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니고, 공안문제연구소를 따로 놓고 토론해야 한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가 이적표현물로 감정되었다. 이 책은 고등학생들 권장도서이다.

### 윤황

우리는 이적표현물 판결과는 상관이 없다. 법원에서 판결한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감정이 그렇게 나왔다. 감정이 개인의 양식과 판단으로써 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보법 개폐와 관계없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이 필요, 폐지면, 개정이던 입법부에서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는 여든, 아든 동의해야 한다. 감정업무 안하고, 인식이 안 좋으니 이를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 문성호

헌법수호청은 우리나라 국정원 경찰이 믹스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안문제연구소와 유사한 사례이다. 독일에서의 감정기관이 어떤건지? 감정절차 사례란 무엇인가?

### 박광작

독일의 BMB 등에서 한다. 헌법수호보호청은 기소권, 수사권도 없다.

### 한상희

공안문제연구소가 감정의 기능을 포기하고 국가이데올로기 개발기구로 나간다. 학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기구가 경찰대학 안에 있어야 하는지는 고민의 필요가 있다. 비밀주의, 폐쇄주의, 공안기관과의 직접적인 주문생산 관계는 해소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자료집

### ▶ 공안문제 연구소

#### 가.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사건에서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근거(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이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 검찰, 국정원, 군기무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문건 감정 및 분석의뢰를 받은 표현물에 대해 '좌익성, 친북용공성향, 용공성, 반정부적 성향' 문제없음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린다.

즉, 사회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한다고 보면서 '좌익성'을 지닌 표현물이라는 감정을 내린다.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수용, 용인,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 이어서 "친분, 용공성향"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내리고 있다. "용공성향의 문건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제시가 미흡할 때는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감정을 내리기도 한다. 더러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용공성, 좌익성, 친북 용공성향, 반정부적 성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감정이 어떠한 근거나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경·검찰은 이적표현물임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써 이 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제출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 1) 공안문제연구소 연혁

공안문제연구소는 1998년 10월 20일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치안본부 시절에는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내외정책연구소를 두었다. 이 연구소는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이후 서울경찰청 산하에는 보안문제연구소가 신설되었다. 보안문제연구소는 1995.1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공안문제연구소에 통합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 2)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

공안문제연구소는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논리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의 지세, 국내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공안관련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개발 및 자문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등

주요기능	구분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이론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 개발	10%
국내외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10%
좌익관련 대안개발, 정책방향 제시 및 자문	10%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60%
기타 유관 안보기관 이념계도 지원(강의)	10%

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 제3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된 기능은 바로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이다.

연구소는 위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를 두고 있다. 또한 소장(별정 2급)을 비롯한 연구부 소속 연구원 16명, 행정직을 전담하는 경찰직원 4명, 기능직 5명 등 모두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계	별정직						경찰직					기능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5	16	1	2	8	3	2	4	1	1	1	1	5
현원	22	14	1	1	8	2	2	4	1	1	1	1	4
대비	-3	-2		-1		-1							-1

〈표〉 공안문제연구소 정·현원 현황

그런데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감정실적을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감정이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아래의 〈표〉 감정실적을 보면 가령 1998년 한해동안 공안문제 연구소의 감정실적은 6,540건에 이른다. 14명의 연구원이 한해동안(365일) 평균 467건여의 감정을 한 것이고, 결국 연구원 한사람이 평균 2일에 3건 정도의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8개월 동안만 해도 7,557건의 감정을 했는데, 이는 연구원 1인당 539.8건을 감정한 것이고, 1일 평균 2.2건 이상의 감정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듯 감정건수의 폭주는 감정의 전문성,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구분	계	도서	간행물	유인물	기타
계	14,097	752	3,524	9,780	41
'98	6,540	568	1,012	4,934	26
'99.8.31 현재	7,557	184	2,512	4,846	15

〈표〉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실적

### 3)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

#### 가) 〈이적표현물〉 감정 사례

##### ① "좌익성"의 유인물

'좌익성'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감정결과서〉를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반자본·반독점 투쟁 등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경우, 공안문제연구소는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좌익성향"이 있는 표현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예는 지난 2002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유인물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지윤(성공회대)씨가 작성했던 최후진술문의 대한 연구소의 감정결과이다.

표 현 물	감 정 결 과
"저는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봉건제가 그랬듯이 자본주의도 영원불변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주장스럽고 낡은 껌질을 벗어 던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더 발전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지윤씨 최후진술문〉"	"현 자본주의 체제를 전쟁과 불평등 및 대량실업을 낳은 체제라 비방하며 자본주의 타파와 더욱 발전된 체제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고무선전하는 것... 좌익성이 있다." (2002. 4.3 공안문제연구소)

〈표〉 예시 1: 좌익성의 유인물

또한 함철호씨는 대경연합 강령과 대구경북 민중연대 수련회 자료집이 문제가 되었는데 공안문제연구소는 〈2001 상반기 대구경북민중연대 수련회〉 자료집에 대해 '좌익성' 범주로 분류한 감정결과(2002.2.28.)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이 자료집은 2001년 9월 열린 대구경북 민중연대 수련회에 배포된 자료집으로 수련회 일정표, 상반기 사업 평가 및 하반기 정세전망 및 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투쟁, 정리하고 반대,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등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주의 쟁취 투쟁, 부시 방한반대, MD반대 투쟁등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등의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집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의 계급투쟁론과 노동계급의 경제, 정치투쟁론, 그리고 북한의 민족대단결론과 대남 통일투쟁노선을 선전선동하고, 결국 한국의 체제와 정부 및 정권을 부정하는 총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바, '좌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에 따라 경·검찰은 위 자료집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 구속기소하였다.

##### ② "용공성"의 유인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 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한 표현물을 살펴보면,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수용, 동조"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포괄적으로 "용공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학내에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재하기 위해 만든 문안인데, 연구소는 이에 대해서 "용공성"의 문건으로 판단했다

표 현 물	감 정 결 과
"노동자 민중은 '고통분담' 도,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 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무능한 선장(김대중)은 선원(노동자민중)의 30%를 바다에 빠뜨려야 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배가 파산하게 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재벌, 관료)들 때문이다.", "이 배의 통제권을 빼앗아 이 배를 선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이 배는 파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고통분담에 대한 대자보문안, 전지윤씨 사건 유인물〉	"현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는 고통분담 논의와 구조조정 정책을 부정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들이 등고 일어나 현 체제의 통제권을 빼앗고 노동자 민중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을 비유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용공성 문건으로 판단됨" (2002.2.4. 공안문제연구소)

〈표〉 예시 : 용공성향의 문건 1- 대자보 문안

아래는 2002년 이적단체로 기소된 한청사건에서 검찰이 이적표현물의 증거로 제출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가운데 일부이다.

표 현 물	감 정 결 과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획기적인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힘있게 조직한다.(답방 환영위원회 구성등) <한청 1기 사업방향 수안(안), 한청(준) 창립준비 소위, 한청 PC통신 게시판(2001.2.8)	“김정일의 답방 환영 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해 답방 환영위원회 구성등의 사업계획은 김정일 답방활동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용공성향으로 판단됨” (2002.2.26 공안문제연구소)

〈표〉 예시 : 용공성향의 문건 2- 한청 사업방향

이러한 공안문제연구소의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경·검은 위 표현물을 국가보안법상 외적표현물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이적표현물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 ③ 친북용공 성향의 유인물

대체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이 담겨 있는 표현물이 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예컨대 한청 회의록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선동노선과 일치하는 것” 이므로 “친북 용공성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주모제의 중심구호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설정하고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 주장과 일치한다.”고 적시했다. 아래의 예는 이적표현물로 기소된 대경연합의 강령규약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 감정결과인데, “우리나라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한식 민중사관’이라는 규정도 애매하지만, 역사분석방법에 대한 몫이 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극히 공안적 잣대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표 현 물	감 정 결 과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우리 민중은 백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을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조국해방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강인하게 분출되었고 일제 패망과 조국분단 이후 통일을 향한 장엄한 투쟁행렬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4월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주항쟁에서 6월의 뛰약별 아래 약동했던 전국적 민주화대투쟁으로 우리 역사는 대중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왔으며 7·8월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민중의 영웅적 신화는 재현되었다.” 〈대구 경북연합 강령 전문〉	“주사파 주동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대구경북지역조직의 강령규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전통 계승 운운하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며 반체제 연북 통일 투쟁을 결의 선동하는 친북용공 유인물.” (2000.1.13 공안문제연구소)

〈표〉 예시 : 친북용공 유인물 - 대구경북연합 강령 전문

### ④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

공안문제연구소는 유인물에 “공산주의 사상, 이론 등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 등 이념적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으나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이라고 분석하였다.

표 현 물	감 정 결 과
“미국은 이번 탄저병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의 최대 위협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워싱턴 타임지에 기고된 한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만이 무기 생산용 분말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내 탄저병 발생을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 이 유인물은 “이념적 측면에서 주장은 없으나 반정부적 성향의 현물로 판단됨.” (2001.10.26 공안문제연구소)

〈표〉 예시 :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 〈다함께〉 반전 특별호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용공성, 좌익성, 친북 용공성향, 반정부적 성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할 뿐더러, ‘감정’의 기준이 공안적인 냉전논리에 근거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표현물 전체의 맥락보다는 몇몇 문장을 문제 삼아 감정의 결과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감정결과에 따라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나) 이적단체 감정 사례 – 한청, 진보의련 사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주로 이적표현물 사건에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02년 9월 발생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사건에서 공안문제 연구소는 이 단체가 “북한의 노선을 고무·찬양·동조·선전하는 이적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단정하여 “국가보안법상 제7조 1항, 3항,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즉, 한청이 자주, 민주, 통일이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한 것은 결국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것이고, 이는 민족해방계열 친북 좌익 청년운동단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감정에 따르면,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된 사회’를 ‘북한사회주의 건설’과 동일시하기도 하였고,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폄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감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인데, 이 “판단”에 따라 한청은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기소된 것이다.

또한 2003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이하 진보의련) 사건의 경우에도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 3항(이적단체),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적단체라는 감정을 내렸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진보의련의 회칙 전문과 제2조를 감정한 결과, “좌파 보건의료 운동을 대표하는 전보의련은 국가 사회안전망 중 주요기능인 보건의료부분의 좌파조직인바, 진보의련을 사법처리해야만이 보건의료부문의 좌경 오염화와 의료운동 부분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을것”이라는 상세한 의견과 함께 이 단체가 “체제부정성 및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는 맑스레닌계열(PDR파)의 좌익의료운동 단체”로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라고 감정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검찰이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는데 주요 증거가 되었고, 또한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하는데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 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는 어떠한 주장이든지 공안의 잣대로 논리 비약시키며, 단순 도식화하여 감정을 내리고 있다. 떠나서 사회문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 체제변혁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친북·용공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감정을 시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권위 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제16조)에도 “감정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과정이 필요할진대,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오히려 연구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감정의 주요 잣대가 되어야 할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공안’이라는 전문성만 보일 따름이다.

이렇듯 공안문제연구소의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결과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 자의적 적용에 일조해 왔다. 또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검찰이 그 사건을 이적표현물로 기소하는데 큰 증거가 되었고, 법원에 의해 주요증거로 채택되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한 전문적인 법학자, 교수들의 증언(감정)을 모두 배척하고,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만을 주요한 증거로 채택, 이적표현물로 유죄판결하고 있다.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지난 불공정성, 주관성 등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주는 꼴이며, 연구소의 존립근거를 강화시켜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의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을 개발”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의 주임무는 ‘공안’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른 상대적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 역시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상황 또한 기존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공안’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관련 연구소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 나.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 연구소

민주이념연구소는 “북한의 대남도발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적표현물 분석업무를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국내좌의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검찰의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건전한 우익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대검찰청 산하에 1997년 1월 10일 설치되었다. (대검 훈령97.1.10.제75호) 민주이념연구소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소장을 맡고,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이 부소장을 겸임하게 된다. 또한 자문 및 연구를 담당할 기구로 자문위원회와 상임 및 비상임 연구위원회로 구성한다. 민주이념 연구소는 소관사무로 1)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체계적 연구, 2) 대공사범의 동향 및 대처 방안 연구, 3) 통일정국에 대비한 공안정국 대비태세 연구,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5) 대국민홍보·안보의식 고양, 6) 공안수사요원 교육, 7) 기타 검찰 총장이 명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이념연구소는 설치된 아래 문건, 도서, 신문광고, 비디오테이프, 노래가사 등을 분석해 이적성이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산하 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하게하거나 안기부 등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 설립이후 감정건수 및 전체분류 현황

출처 : 공안문제연구소

구분	계	도서	간행물	유인물	기타
계	77,934	66,012	6,918	4,467	537
1991	4,643	3,569	315	708	51
1992	2,918	2,321	422	172	3
1993	2,571	2,006	304	250	11
1994	4,342	3,358	401	473	109
1995	3,548	3,027	286	178	57
1996	6,030	4,640	636	654	100
1997	4,831	3,522	868	371	70
1998	6,540	4,934	1,012	568	26
1999	7,501	6,312	930	234	25
2000	5,798	5,083	536	167	12
2001	8,528	7,731	560	211	26
2002	7,346	6,665	477	184	20
2003	7,710	7,395	156	133	26
2004.8.31	5,629	5,449	15	164	1

※ 89, 90년 통계자료 없음

# OhmyNews

음지의 '사상감정소', 양지로 나오다, 2004.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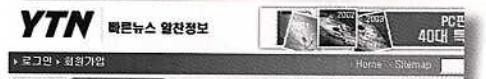
"사상감정서 무분별 발급경찰 소장압력-경찰청입김" 2004.10.11



공안문제연구소, 존폐도 논란, 2004.09.22



공안문제연구소 "죄의용공 감정서 남발 의혹"파문 확산, 2004.10.12



노컷뉴스 사회



# 한국일보

## 공안研 분리독립

사건감정때 편파 논란…민간에 문호개방도

공안사건 감정 때 '편파성' 논란  
을 빚은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가 장기적으로 경찰에서 분리 독립된다. 또 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한다.

경찰청은 10일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공

정한다.  
경찰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구소의  
공안사건 관련 연구결과를 검증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공

정성과 편파…민관 합동 운영하는  
다는 판단으로 공안문제연구소

는 민관 합동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 관련규정을 개

공안문제연구소 베일벗긴다, 2004.09.22

# 한겨레

경향신문사

# <내부고발자 편지>

## <의정 제보>

최근 언론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가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오니 관련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익명으로 제보하오니 이해바랍니다.

- (1) 현재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감정서 작성에서의 객관성, 공정성을 침해한 최대의 원인은 경찰출신 연구소장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 공안문제연구소장은 처음 개소할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 출신의 소장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대 소장이 60세 정년퇴임을 하자, 이후부터는 계속 보안경찰 출신자가 소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所務를 통괄한다는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감정서 작성에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감정서를 2부씩 제출하도록 하여(1부는 감정의뢰처에 송부하고, 1부는 소장이 검열용으로 사용) 의뢰된 감정문건이 될 수 있는대로 좌의 용공으로 판정되도록 유도하고, 감정 결과 좌의 용공이 적은 연구관들에 대해서는 갖은 압력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보안국 대공분실에서 수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감정인 경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감정서 작성에 개입하여 감정서를 검열하고 될 수 있는대로 좌의 용공으로 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경찰의 경우, 보안사범 5명을 구속시키면 특진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정서의 결과는 이들 경찰관들의 특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진보의련 사건이라든지 한청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정 조직 사건인 경우,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 → 연구소장 → 연구관으로 압력이 전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 수사기관이 감정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 야단법석을 떨고, 곧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의 감정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일선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되겠는가? 경찰 수사관이 빨갱이들의 문건 하나를 입수하는데 목숨을 거는데, 이들이 기소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좌의 용공을 많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만인 감정서에 대해 재감정을 지시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연구관들도 알아서 기지 않을 수 없고, 좌의 용공을 많이 잡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경찰출신 연구소장이 경찰청 보안국 수사에 이렇게 협조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과거 인맥들과의 인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별정직 신분의 소장은 경찰청에서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경찰에 대해 알아서 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출신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2) 여태까지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연구기관의 長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 보다는 경찰청 보안국의 입장에서 혹은 경찰청 차원에서 퇴직 경찰관들의 자리 배치 차원에

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은 오직 경찰청장과 경찰청 보안국의 눈치를 살피는데에만 신경을 쓰고, 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만드는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2대 소장이었던 박정섭은 경찰청 보안국에서 잔뼈가 굵어 총경출신으로 계급정년을 맞게 되자 경찰청장에게 택을 써서 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연구소가 있던 홍제동 대공분실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대공분실에서 의뢰된 감정문건은 거의다 좌익 용공으로 잡아주도록 강요했습니다.

박정섭이 암으로 죽고 난뒤 새로 소장으로 온 김윤근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와서 박종철 사건때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1과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주사범학교가 최종학력이었습니다. 연구소 재직 약 3년간 원고 한편 쓴 적이 없고, 오직 출근해서 연구관들의 감정서 검열만을 일과로 하고, 좀 약하게 잡으면 빨갱이 운운하면서 다시 감정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연구소장을 그만둔 뒤 비록 선거에서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보안경찰 출신자들의 도임인 총의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공안문제연구소에 있을때 모든 감정서를 좌익 용공으로 하고자 했다는 점을 자기의 업적으로 홍보하곤 했습니다.

현 소장은 과거 YS 시절 김현철이 줄을 달아 경남청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대학의 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나, 경찰관으로 재직시에 보안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열등감을 해소코자 그는 소장 취임후에 감정서 작성에 유난히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념문제와는 전공이 달라 재직기간 3년 동안 업무관련 글 한편 쓰지 않고, 오직 연구관들을 동원하여 자기의 MBO 관리에만 신경썼습니다. 그는 출근해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등산만 했습니다. 오직 업무는 작성된 감정서 검열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지내다가도 경찰청 보안국이 신경쓰는 조직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서 작성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문제가 된 진보의련 사건이나 한청사건 등에 조직에 대한 감정이 되게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업무 범위는 의뢰된 개별 문건에 한정해서 감정서를 작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 보안국이 공명심을 갖고 수사하게된 상기 사건에 대해 연구소장은 오직 경찰청에 잘보일려는 의도로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연구관들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였지만, 연구소장은 이를 소장 직권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관련된 결제서류는 공안연구소 서무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소장은 최근 논란의 와중에서도 그 어떤 대책회의나 연구소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연구소의 향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하던 각종 회의들도 최근 들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 일간지에 난 “공안문제연구소가 향후 연구 방향을 테러나 극좌 극우, 탈북자 문제 등을 하고자 한다.”는 기사도 연구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오 난 뒤, 연구소 내에서 그것도 팬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소장을 중심으로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경찰대학 내의 또 다른 연구소인 치안연구소와의 통합논의도 연구관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안이지만, 소장은 통합될 때 자기 자리 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대 통합불가의 원칙을 시도해도 없이 외치고,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류의 소장의 행태는 특정 개인이 무능하거나 용렬해서가 아니라 경찰출신이 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공안문제연구소의 논란의 핵심인 감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등은 소장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자격자를 임명한다면 최근의 논란과 일부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안문제연구소 개혁문제의 핵심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지금처럼 소장이 경찰출신이 오고 그의 신분이 언제나 교체 가능한 별정직 신분으로 유지되는 한, 경찰출신이 그는 감정 의뢰처인 경찰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구소장의 민간인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안문제연구소 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의 개혁 방도일 수 있는 경찰대학 내의 치안연구소와의 통합안도 소장이 예전처럼 전직 경찰출신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현직 경찰이 소장인 경우보다 더 못합니다.

이 회는 제도가 좋기 때문에, 감정서의 결과는 이를 경찰관찰과 복권에 굉장히 유통되는 유통망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본래가 된 진보적인 사건이냐든지 환경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환경 조작 사건의 경우, 경찰청 보안과 출사령장 → 연구소장 → 연구소장은 감정이 전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래 사건에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수행해온지 감정서에는 표기하면 안될지를 알고 본 회사를 소진하기.” “우리가 출사령장을 주고온데, 우리가 일한 경찰관과 사건을 막아놨어야 되겠는가? 경찰 주사장이 막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게 좋을 거는데, 이들이 가수를 써 있게 우리가 막았어야 되어야 한다. 과학 유통을 놓아 놓아 놓아 한다.”고 강조하고, 본연의 감정서에 대해 비난정을 지적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연구관들도 알아서 기자 간을 수 없고, 과학 유통을 놓아 놓는 것의 애국인 것처럼 본인기를 돌아갔습니다.

경찰출신 연구소장이 경찰청 보안국 수사에 이렇게 협조력을 주 밖에 않는 이유는 자기와 과거 협력동파의 단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적절적인 원인은 경찰과 언론의 소장은 경찰청에서 만들었으면 면제든지 고려할 수 있는 선별법의 통한명 때문에, 경찰에 대해 알아서 기자 활동을 주 업무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문에 경찰출신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한, 절감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성을 하자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사례학적 연구소장으로 임명해, 사람들은 연구기록의 청소로 따 갖추어야 할 신뢰와 역량 보다는 경찰과 보안국의 입장에서 좋은 경찰을 기준에서 으로 조건문제의 자리로 하기 원해